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42
----------	------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김은영 의원, 곽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친목을 다지고, 일자리 활동 참여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 및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노년기의 고립감·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 범위와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경로당 안전지킴이 및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경로당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용도 건물의 매입
2. 경로당 신·개축
3. 경로당 개·보수
4.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5. 경로당 이용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6.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경로당 안전지킴이)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안전지킴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안전지킴이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안전 및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 경로당 안전지킴이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제2호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른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및 회원 관리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

3. 경로당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5. 그 밖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2장(제3조부터 제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경로당 안전지킴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경로당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2021.12.21. 일부개정, 2022.3.22. 시행)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022. 11. 22.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제25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
 3.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을 제외한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6. 삭제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르신 우대 조례」 (2023.5.30. 일부개정·시행)

제3조(경로당지원) 군수는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사업 및 매입비용
2. 경로당 개·보수 사업
3.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육체적, 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각종 기구 구입
5.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제2조 제2호의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내용) “어르신일자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한 사업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13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자 보조금
2. 작업장 설치 및 개·보수 비용
3. 작업장 운영비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비용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월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군수가 고시할 수 있다.